

제 1 차

신공안정국에 맞서는 국/민/대/토/론/회

□ 일 시 : 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14:00~18:00

□ 장 소 : 만해 NGO 교육센터

주 관 : 민 주 주 의 법 학 연 구 회

주 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학 술 단 체 협 의 회

민 주 주 의 법 학 연 구 회

제1

신공안정국에 맞서는 국/민/대/토/론/회

□ 일 시 : 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14:00~18:00

□ 장 소 : 만해 NGO 교 터

14:00~14:20 **인 사** **임 재 홍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영남대 법대)
 강 정 구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동국대 사회학과)
 백 승 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발 표

사 회 **김 선 광 교수** (원광대 법대)

14:20~14:40 **제1주제** : 60년 묵은 악법, 국가보안법을 위한 변명
 오 동 석 교수 (아주대 법대)

14:40~15:00 **제2주제**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을 계기로 본 국가보안법
 고 민 택 집행위원장 (사노련 공대위)

15:00~15:20 **제3주제** : 이명박 정부의 공안사건 분석
 고 재 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5:20~15:40 **제4주제** : 최근 국가보안법 현황
 한 지 연 활동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5:40~16:00 휴 식

16:00~16:20 **제1토론** : 장 시 기 교수 (동국대 영문과)

16:20~16:40 **제2토론** : 박 진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16:40~17:00 **제3토론** : 김 준 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7:00~18:00 **종합토론**

※ 토론회 종료 후인 은 7시부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치유 로그 내면의 불 내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0년 묵은 악법, 국가보안법을 위한 변명

오 동 석 (아주대학교)

60년 묵은 악법, 국가보안법을 위한 변명*

오 동 석 (아주대 교수, 헌법학)**

I. 리말

2004년 제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 논의에 싸인 국가보안법은 거 이론에 몰려 거의 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한겨울의 위에도 아 곳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끝장내려는 시민들의 열 망을 뒤로 한 민의를 대변한다던 국회는 “국가보안법은 이를 지한다.”는 불과 한 줄의 법 을 끝 내 만들어내지 못하 다.

당시 ‘국가보안법을 고치거나 기하지 말고 저절로 사라지도 하자’는 ‘국가보안법 고사론’이 기억 난다. 마치 국가보안법의 유언을 대신하 편히 가게 내버려두라는 나지막한 말투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았었다. 결국 4년 뒤 자리를 박 고 일어나 이적(利敵)을 양산해내는 국가보안법의 이적(異蹟)을 보 노라면 ‘ 법도 60부터’라고 수의 광기 어 을 두르고 있는 형상인가 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포된 이해 60년 동안 법의 대명사로서의 명을 유지해 왔다. 그 중 3분의 1을 지하는 최근 20년간은 이른바 민주화 시기 는데도 국가보안법은 지되지 않았 다. 아직은 민주주의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오히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은 수 록 개 되면서 어느 국가보안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법의 두마 로 자리를 았고, 국가보안법 보다도 더 치고나갈 기세이다.

그리고 보면 민주화 시대에 오히려 독재정권 시절보다 많은 법들이 장했고, 예를 들어 리방지 법처럼 세상에 선을 보이고자 몸부 을 쳤던 것 같다. 그 때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 는 사람들은 기를 고 법의 탄생을 막아보려고 를 썼고, 나의 경우에도 몇몇 법(안)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법조문을 해석해가며 요모조모 위헌론을 제기하기도 하 다. 그런데도 법의 물결은 수 그리들지 않았고, 현 정권은 준법을 외치며 점점 난폭해지고 있다.

사실 법은 법일 뿐이다. 60년 은 법인 국가보안법을 변명하고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냐하 면 정작 단죄되어야 할 대상은 진작 지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계속해서 공안의 최전선으로 내몰 아왔고 또 다시 은 법을 앞세우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배후조종세력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60 년 동안 버 을 수 있었던 까 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임없이 제2, 제3의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거나 지금도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체제유지에만 안이 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 학 논문이 아닌 연구노 단계의 이어서 본문이나 각주에서 내 이나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경우 미처 직 인용부호를 달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인용하 음을 밝 니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학 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경, 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그들이 바로 ‘지대상’이다. 이들은 1%의 99% 자유를 위하여 99%에게는 1%의 자유만 인정하고 99%의 부담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현 ‘강부자 정권’에게 충성을 서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시장 신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민주공화국’을 사상태에 뜨려 놓았다. 어 보면 국가보안법은 역대 정권의 희생양일 뿐이므로 국가보안법에게 아꼈던 그 모든 비난은 고스란히 공안기관, 반민주적·반인권적 정권, 과거 반공이데올로기 지배체제와 지금의 친자본·반서민적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게로 돌려져야 한다.

II. 시장 신자본주의의 강요와 그에 대한 저항의 폭력적 진과 예방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시작된 불집회는 그 의제를 무한경쟁의 입시위주 교 정책 반대, 운하건설계 백지화, 의료보험 사유화 반대, 공기업사유화 반대, 인적 장과 법제 개을 통한 언론 공공성 침탈 등으로 확장하였다. 유례없는 국민의 직행동에 관한 이명박 정부는 불집회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때로는 정면으로 때로는 우회하여 전면적인 공세적 대을 강화해 가고 있다.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은 제 입대로 대로 만든 ‘법(에 의한) 질서’ 준수를 외치며 다수 국민을 박질러 집권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 부재 문제를 물리력으로 돌파하였다.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버수 있었던 또 다른 천은 경제권력을 비한 각 부문 어용권력과의 유이었다.

그런데 헌법이 정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절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초부터 그 어느 독재정권 못지않게 강적인 경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또 다른 원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입만 열면 공언하 경제 살리기 안을 기업 또는 소수 돈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하게 내려다보니 무리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쯤 되면 그토 강조하는 법질서에서 법도 내 개치고 오로지 질서만 부여 고 정치적인 ‘선전목적의 상투적 문구’¹⁾로 법치를 동원하는 지경에 이를 것은 히 보이는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치주의가 “정치적 개념으로 용될 경우 지배체제에 대한 절대적 의를 강요하는 일종의 준법논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 민주주의 토대 없는 법치는 무법(無法)천지와 다를 바 없으며, 굳이 법치가 있다고 우긴다 해도 그것은 무력에 방점이 ‘무’(武)법일 뿐이다. ‘무 만 법치’인 무법천지에서 법은 폭력의 외피일 뿐이다.³⁾

1. 시장 신자본주의의 강요

1) Philip Kunig, *Das Rechtsstaatsprinzip: Überlegungen zu seiner Bedeutung für das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J.C.B. Mohr, 1986, 123 아래: 국순, 「법치국가의 신화와 현실」, 『민주법학』 제18호, 2000, 98 에서 재인용.

2) Philip Kunig, 앞의 책, 124 아래: 위와 같음.

3) 오동석, “민주주의 없는 법치는 무법천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2008.5.14, 2 .

신자유주의 경향은 ‘사회관계의 총체를 시장관계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 논리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⁴⁾한다. 국민국가의 경제정책은 점점 세계시장의 동학과 국제기업의 전략에 좌우된다. 더 나아가 “신입헌주의”는 적극적으로 ‘국제적 정치경제논리가 국민국가의 재정·통화·무역·투자 정책으로 관될 수 있도록 국민국가 내의 민주적 결정과정을 제한함으로써 정치가와 시민으로부터 소외시켜야 함’⁵⁾을 역설하고 있을 정도이다. 신입헌주의로 이름 붙여진 법의 세계화는 1980년대 국제통화기금(IMF),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하여 “국가가 전제되지 않은 세계법”의 형태로, 그리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보편적 시장체계의 형성을 지향하며 진행되고 있다.⁶⁾

신자유주의는 국민국가 재구조화를 부기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헌법현상은 근·현대 헌법법의 전도적인 괴이다. 근대헌법이 구했던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최소국가와 현대헌법이 구했던 사회지국가원리에 입각한 적극국가는 정반대로 전화한다. 국가는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는 역적으로 간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인권을 침탈하는 한편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는 최소한으로 개입함으로써 자본의 반인간적 이윤구를 방임한다.⁷⁾ 경제적·성원리가 자유주의적·사회국가적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정치적 시장화”⁸⁾는 ‘정치적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국민과 경제의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본가 사이의 일종의 권력분립의 형상’⁹⁾을 무뜨리고 있다.¹⁰⁾

먼저 시장신자본주의 정책은 서민들의 그 자체를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대표적인 것이 을거리의 위기이다. 을거리의 위기는 그동안 광우병 파동, 조류독감, 식위기, 유전자조작식품의 모으로 드러나다가 최근 라민 파동에 이르렀다. 이것은 개 국가의 안전주권을 해체해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이윤구지상주의에진 자본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위험을 긴 상품들이 전 세계로부터 ‘서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아저 들어온 결과 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민 파동은 “거대 식품기업들이 비용을 기 위해 국내외의 아웃소을 하는 가운데 유해성을 담보로 한 저 한 원료들(예, 라민)이 제품의 다단계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 한 상품의 가치사을 통해 이 지기 때문에 위험의 투입과 이전경로가 게 드러나지 않는다.”¹¹⁾ 그밖에도 무한경쟁의 교 정책, 공기업 사영화,¹²⁾ 의료사영화, 물산업화, 경제성장론에

4) 김세,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김성구/ 김세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61-2 .

5) Gill, Stephen, “Globalisation, Market Civilisation, and Disciplinary Neoliberalism”,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95, 412, 413 : 순영,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민주법학』 제2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5, 141-2 에서 재인용.

6) 한상희, 「투자자-국가제소제도와 헌법: 한미FTA협상과 관련하여」, 미발표원고 참조.

7) ‘약화되면서도 동시에 강화되는 경 국가’에 대하여는 이계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 국가의 강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음,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2001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관 사, 70-72 참조.

8) Dahl, Robert A., 안승국 김, 『경제민주주의』, 인간사, 1995, 역자서문 6 .

9) Kühnl, Reinhard, 서사연 김, 『부르즈와 지배 체제론: 자유주의와 과시』, 학문과사상사, 1987, 106-7 .

10) 오동석, “한미FTA와 의회민주주의 실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미FTA 협정문 분석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7. 6. 25, 41 .

도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이다.

다음으로 노동할 권리와 노동3권을 위협하는 자본 중심의 정책¹³⁾은 노동하는 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예 대 노동부는 비정 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¹⁴⁾ 더 이 1% 대 99%의 사회양극화 정책은 서민의 에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을 안김으로 서민들은 곤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예 대, 감세정책 기초의 세제개편,¹⁵⁾ 1[2]를 위한 중부세의 무력화, 타운 정책¹⁶⁾ 이 그것이다.

2. 국민 저항에 대한 폭력적 진 과 예방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정책치고 어느 하나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눈을 고 도 기 어렵다. 불집회와 같은 국민적 저항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그러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은 자명하다. 거 로 정부 에서 보면 1%를 위한 정책을 진하기 위해서는 불집회 같은 형식으로 표출되는 서민들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 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이어질 반민주적·반인권적인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국민의 저항이 불가능하도 비 세력을 무력화 시 고 예방적 진 을 할 필요가 있다.

국순 은 11년 전에 “지배체제가 위기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어김없이 아 드는 불청객”이 “분단모순의 산물”인 “공안정국의 망령”인데, “공안정국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살풀이국이 한바 벌어지면, 아전인수식 국가안보논리가 기지개를 켜고 양자 일의 백논리가 광란의 을 다”고 서 한 바

11) 한국의 수입식품 의존도는 전체 열 기준으로 65%에 이르며, 가공식품의 경우는 80%를 넘어선다. 현재 126개국에서 3000여 가지의 식품을 수입하는데, 그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3분의 1을 지하며, 세계 식품 첨가제의 80%가 또한 저 한 중국산이다. 결국 중국은 여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과 위험의 요소를 은 함으로 상품 외에 소비자가 원치 않는 치명적 위험을 으로 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조명래, “[경제 렘]금융 위기와 거리 위기”, 경향신문, 2008.10.8자.

12) ‘1 공기업 선진화 대상이 아니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8.8.11 이명박 대통령과 케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날 전격적으로 대상에 포함’(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되었는데, ‘건설비 9조2천억 인천공항 지분 절반을 2조 미만에 매각할 게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민주당 김성순 의원). 경향신문, 2008.10.7자.

13) 2008.10.7. 민주노총이 발표한 ‘ 은 일자리 지수 OECD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시직 비 은 29.7%로 OECD 가입 28개국 중 스 인(30.4%)에 이어 2위로서 OECD 평 임시직 비 (13%)보다 2배 이상 은 수치다. 한편 저임금 노동자 비 (24.5%), 성 임금액 (38%), 연간 노동시간(2261시간), 인구 10만명당 산재 사망자수(30.8명)는 OECD 국가 중 가장 아 ‘불명예 1위’를 지했으며, 고용 은 54.8%(27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경향신문, 2008.10.8자.

14) 이는 경영주들의 요구 는데, 이들은 비정 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 제한을 할 것까지 요구하 으며 또한 이와 더불어 파견업무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다. 경향신문, 2008.10.7자.

15)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기 재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류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하더라도 소득 상위 10% 계 에 이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2008.10.8자.

16) 서울지역의 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최소 14만명이 자신이 거주하던 의 터전을 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김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 타운 및 형발전촉진지구 총괄 진 현 ’ 의 자료에 따르면, 지구지정된 35개 타운 중 재정비촉진정비계 이 결정된 27개 타운의 수용인구는 58만4339명으로 집계되었는데,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72만4585명으로 타운 사업을 통해 14만246명의 거주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원주민의 20% 정도가 의 터전에서 겨나는 이다. 예 대 가재울 타운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인구는 5만5370명이지만 타운 개발이 완료된 뒤 게 된 수용 인구는 2만6706명이어서 현재 인구보다 무려 51.8%가 줄어든다. 경향신문, 2008.10.8자.

있다. 그는 그 때면 “으레 리를 내미는 것이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수호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울뿐인 민주주의조 사라졌다. 그리하여 자본의 자유, 대기업의 자유, 1%의 자유만 아 경제민주주의, 99%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누르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 언론의 친자본화·친정부화와 동시에 인터넷 언론의 압박음이다. 예 대 100대 국정 과제 중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방송·통신산업 제 완화,¹⁷⁾ MBC ‘PD 수 ’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 KBS 표적감사¹⁸⁾와 KBS 사장의 강제 교체, YTN 구분 사장 임명과 노조위원장 해고 그의 보 적인 무더기 중 계 조치,¹⁹⁾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용하고, 인터넷 포 을 ‘인터넷 신문’에 포함, 제하도 하는 신문법 개정안, 인터넷 실명제 확대²⁰⁾와 ‘사이버 모 죄’ 신설 시도 이 그것이다.

세 번째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서민적인 집회·시위의 원천봉 이다. “사실 자본에 포 되기 십상인 조중동류 신문매체 또는 사영방송매체이나 정치권력이 호시 감으로 노리는 공영방송매체에 비하면, 거리와 광장에서 몸을 부대끼며 입으로 의사소통하는 집회 및 시위야말로 가장 민중적이며 서민적인 원초적 표현방법이다.” 그런데 정부는 고교생 불집회 참가자를 무 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고, 심지어 유모 마들을 아동학대죄로 처벌하려고도 하고 있다.²¹⁾

마지막으로 국가비밀주의의 강화이다. 예 대 민감한 자료에 대한 행정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버 기식 거부와 자체 보안성 심의를 통한 제출 거부,²²⁾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안’²³⁾에서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 개발 국가이 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 이 그것이다.

국민의 경우 공개투표 아닌 비밀투표에 의하여 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의 경우 투명성을 이고 헌법개정안 의결시 기명투표를 하게 하는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비밀 보호 그리고 권력의 투명화와 책임성 확보가 헌법적 발전일 터인데, 인터넷 상에서 실명제를 확대함으로써 명의 권리를 부정하고 오히려 정부는 비밀의 일을 어 려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일임에 었다.

17) 경향신문, 2008.10.8자.

18)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주로 외부 감사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내부 감사위원들은 (감사결정으로 유도)한 것으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해석하 다. 경향신문, 2008.10.7자.

19) 경향신문, 2008.10.8자. 그 내용은 전·현직 노조집행부 6명 해고 노조원 33명 중 계 는데, 이들은 사장의 하산 임명에 대해 반대하여 사장 진을 주장하면서 3개월 가까이 출근저지 투쟁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29일부터 사원 283명이 레이 단식 성에 돌입하 다. 경향신문, 2008.10.7자.

20) 인터넷 실명제를 하루 평 이용자 10만 이상 사이 로 확대하는 ‘최진실법’이 그것이다. 2007년초 자수 유 니씨가 자살한 지 5일 후 국회는 하루 평 이용자 30만명 이상의 포 사이 및 20만명 이상의 언론사 사 이 를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했다. 민경배, “‘최진실법’ 운운은 모 죄”, 경향신문, 2008.10.8자.

21) 국제 스 는 불집회 최종보고서를 통해 “대체로 경 이 절제력 있고 능숙하게 행동했지만, 특정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대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국제 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 다. 따라서 스 는 현행 집시법을 개정하고 인권 유 책임자를 아내 처벌할 것을 권고하 다. 이어서 시위진 경 이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경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 분명한 기준과 함께 격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 경 의 이름 표를 달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겨레, 2008.10.8자.

22) 2008.4 총리실 주도 하에 부처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 으며, 제출거부 문서 목 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친인 의 청와대 출입기 , 중부세 개편 관련 세입 계성 ’이 포함되어 있다(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 인의 리). 경향신문, 2008.10.7자.

23) 의안번호 819, 2008.9.2 정부 제출.

3. ‘결단주의적 우적론’에 입각한 전체주의적 준범이데올로기

국순 은 전투적 민주주의 끝에서 미 류의 결단주의적 우적론을 발견한다.

이처럼 가치절대주의에서 정치적 관용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전투적 민주주의의 단선적 논리가 가 질주 끝에 내 게 되는 막다른 골목은 미 류의 결단주의적 우적론이다.²⁴⁾ 내 편이 아니면 적이며, 적 과는 사생결단의 한바 싸움도 불사해야 한다는 결단주의적 우적론은 일체의 중간항이나 제3의 대안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마름질하려는 파시스 적 발상에 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적, 헌법의 적,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적 이리저러한 적대범주를 제 대로 설정한 다음, 누구든지 이 범주에 든다고 정되면 설사 헌법의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그로부터 정치적 관용의 을 거 다.²⁵⁾

결단주의적 우적론에 따르면, 적으로부터 우군동지를 식 하는 유일한 기준은 헌법충성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충성은 헌법 범에 대한 일상적 의미의 적극적 관심표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 기본법이 헌법의 이름으로 받치고 있는 지배체제에 대한 실존적 개입,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배체제의 공정이데올로기인 반공산주의에 대한 헌신적 무를 의미한다. 헌법충성과 지배체제에 대한 실존적 개입 이 이처럼 동일평면에 놓이게 되면, 헌법은 이미 공동체의 생활을 하기 위한 행위 범이기를 그만두고, 지배체제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시민도덕장전²⁶⁾이나 정치적 행동강령²⁷⁾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상과 표현의 영역은 자연히 소되고 자유의 정신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할 인격상호의 주체적 담론 대신, 위 의식에 터 은 상호 충성경쟁이 헌법생활의 교통양식으로 리를 내리게 된다. 더 이 헌법생활의 교통양식으로 이미 리를 다진 상호 충성경쟁이 집단적 내면화의 과정을 통하여 일종의 불문헌법 로 국민의 의식속 깊숙히 자리 게 되면, 헌법현실의 파시 화 경향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사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우적론은 헌법충성도 아닌 목적인 질서충성이다. 그 선봉에 색 론과 매 시 적 마 사 그리고 사상통제의 얼굴마담 국가보안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교과서 내용을

24) Martin Kutscha, 위의 책, 312 이하, Ulrich K. Preuß, *Politische Verantwortung und Bürgerloyalität. Von den Grenzen der Verfassung und des Gehorsams in der Demokratie*, Frankfurt a. M./1984, 198 이하.

25) 예 대 1972년 9월 27일자 부르 주상 행정재 소의 결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대목이 눈에 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체제이다. 그것은 그러나 바이마르공화국과는 달리 기본법이 자유로운 질서를 공격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시민들이 오히려 이 질서를 수호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기본질서의 적들이 비 합법성의 안에서 행동하더라도 이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르 주상 행정재 소의 이같은 시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 점은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d. 28, 48 과 Bd. 30, 119 이하 참조.

26) Ulrich K. Preuß, *Politische Verantwortung und Bürgerloyalität. Von den Grenzen der Verfassung und des Gehorsams in der Demokratie*, Frankfurt a. M./1984, 260 참조.

27) Erhard Denninger, “Freiheitsordnung-Wertordnung-Pflichtordnung. Zur Entwicklung der Grundrechtsjudikatu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Mehdi Tohidipur(Hrsg.), *Verfassung · Verfassungsgerichtsbarkeit · Politik. Zur verfassungsrechtlichen und politischen Stellung und Funktio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Frankfurt a. M./1976, 163-183 수), 178 참조.

28) 국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통권 8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4), 155-156 .

문제 삼은 수정 요구²⁹⁾를 비 한 역사의 곡 또는 일화,³⁰⁾ 국정감사에서의 색 론³¹⁾과 매 시 적 사상검증,³²⁾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 이다.

국가보안법과 그 뒤를 주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는 그리 반 일은 아 것이다. 한을 동반자라기보다 적으로 보는 시각에 편향된 입장에서 굳이 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생 리도 없을 것이고 그 필요성도 못 느 것이며, 오히려 한과의 관계가 럽게 되면 대내적 불만을 다스리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6·15와 10·4 선언 내용의 이행에 나서기는 대 식 지원에 배 기기로 일관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비핵·개방3000’ 구상이나 집어 는 행태가³³⁾ 이해될 법하다.

적은 친구를 통해서 그 존재감이 도드라진다. 짝사 관계를 내세운 과 친미 정책이 그것일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가 헌법 범을 초토화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이 러한 헌법의 범력 상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국내·외적으로 확장하는 데 골몰할 뿐이다.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국제통상조약을 매개로 자본 편향적인 세계경제체제를 출 해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FTA라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에 확고히 편입시 고, 이를 토대로 …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 체제를 구 ”(괄호 안은 인용자)함으로 “경제적·정치 적·군사적 합병”³⁴⁾을 하고 있다.³⁵⁾

김세 은 한미FTA의 체결이 “한국경제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완결시 는 계기”라고 평가한 다.³⁶⁾ 그것은 미국계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 대”로 작용함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해체로 인한 다수 국민의 사회적 소, 중소자본과

29) 교 과학기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금성출 사 역사교과서는 한 교과서를 그대로 것”이라며 한 역사교과서인 ‘현대조선역사’를 들고 나왔고,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1980~90년대 운 동권이 잃던 책과 유사한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쿠데타”라고, 같은 당 이 우 의원은 “지난 5년간 좌파 진교조 교사들이 마음대로 편향된 역사 교 을 시켜왔고, 결국 청소년들의 곡된 역사관으 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2008.10.8자.

30) 이상희 국방장관은 2008.10.6.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3 사건은 사건을 주동하고 개입한 로당 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일으 무장폭동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초 고 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을 ‘좌 세력의 반란’으로 표기해 달라고 교 과학기 부에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달 ‘좌 세력의 무장 폭동’으로 수정 제안했다. 한겨레, 2008.10.7자.

3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문예진 기금·방송발전기금 중 지 난해까지 5년동안 76억5000만원이 좌파 단체에 지원됐다”면서 기금의 좌편향 지원을 문제 삼았다. 경향신문, 2008.10.8자.

32) 2008.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표적감사 관련 증인인 KBS 이기 이사가 “KBS 감사가 무리 다고 본다”고 답하자,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6·25는 침이나, 침이나”고 질문한 뒤 “ 한이 6·25를 일으켜 수백만명을 는데 유 참전군 일부가 민 학살을 한 것을 가지고 (KBS가) 6·25만 되면 어 다. 한군을 미화하고 미군이 더 나 다는 식으로 호도해도 되는 거냐”고 질책했다. 최병국 의원도 “공영방송에 적기가 나오고, 송두 교수를 민주투사로 사하고, 마오 등 업적을 찬양하는 정체성을 부 인하는 것을 용인해도 된다는 거냐”고 호통쳤다. 경향신문, 2008.10.8자.

33) 경향신문, 2008.10.8자.

34) 김세 , 「한미FTA 국민보고서 총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 연구단 음, 『한미FTA 국 민보고서』, 그 비, 2006, 20 .

35) 미국은 2002년 WTO 각료회의 실패 이후 GATT/WTO 제24조에 명시된 FTA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 의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을 관 시 고 있다(이해영, 『 선 식민지, 한미 FTA』, 이데이, 2006, 19).

36) 김세 , 앞의 (2006, 28 .

영세자본의 도태와 노동자들의 곤화, 민 의 피 화, 환경재 과 문화 침탈 의 과를 을 것 이라고 진단한다.³⁷⁾³⁸⁾

그밖에도 한미군사관계의 경우 100대 국정과제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보완이 포함 되어 있으며,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수입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여 시중에는 위험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유통 중이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부의 적이 더 무 다. 그 내부의 적을 색출하고 공격하는 데는 공권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시민사회의 분열을 부 기거나 아니면 두 들어 반 법도 하다. 사회의 자 성을 감아 는 전체국가화 경향이 제법 모가 있을 것이다. 더 이 신자유주의의 교리는 제완화를 통하여 자본의 자유를 용할 뿐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 성에 대하여는 오히려 제를 강화함으로 자유를 부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는 학문, 예 , 교 의 영역에 개입의 강도를 여가고 있다. 예 대 예 과 연구기관에 대한 임기를 무시한 코드 인사,³⁹⁾ 예산 지원의 화,⁴⁰⁾ 역사교과서 문제, 국립현대미술관 구입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⁴¹⁾ 색 론,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⁴²⁾ 교사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⁴³⁾ 이다. 다른 한편 친자본적·보수적 관변단체는 국가권력과 이념적 동지의 식을 내보이며 국가권력의 역 적 개입을 이 는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 대 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KBS 표적감사 청구,⁴⁴⁾ 사립대학에서 비리 설립자의 시도 이다.

III. 공안기관의 발호와 여타 국가기관의 공안주변화

1. '제왕적 대통령'의 환과 공안기관의 충성경쟁

37) 김세 , 앞의 (2006), 28-30 .

38) 오동석, “한미FTA와 의회민주주의 실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의 책, 41-2 .

39)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문화예 관련 기관에서 “기관장이 교체된 기관은 예산이 증 됐고, 교체가 안된 곳은 감 됐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23개 국책연구기관장 중 15개 원장이 바뀌었”는데, 그 중 11명이 정권교체 및 인수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8.10.7자.

40) 한국예 종합학교(총장 지우)가 2007년부터 진해온 예 과 과학의 통 교 예 대한 예산이 실무 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감되었는데,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예종이 좌파 리 집단이라는 라이 진영 과 현 정권의 시각이 반영된 처사”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 2008.10.7자.

4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서면질의서에서 “2004년 이후 현대 미술관에서 구입해오던 민중계열 작품이 2007년에는 구입 작품의 56.1%에 해당하는 148점”인데, 그 구입 경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 다. 경향신문, 2008.10.8자.

42) 정부기관이 금서로 인을 는 경우는 대부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죄이며, 이적표현물 여부 단은 경 의 공안문제연구소, 대검 청의 민주이념연구소, 군의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 에 한다. 정현상, “시대의 금지, ‘불온도서’의 역,” 인권 52호, 국가인권위원회, 2008. 9-10, 38 .

43) 최보경 교사는 2008년 2월 자신이 지도한 간디학교 동아리 ‘역사배움터’를 통해 한의 주체사상을 정당화 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 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2008.9.29자.

44) 라이 전국연합이 감사를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7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과의 민주적 소통을 모르는 제왕적 대통령이 환하 음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공안기관에게 10년의 세월은 날에 비해 가까이 하기 무 었던 왕의 환을 고대했던 긴 세월이었을 것이다.

1) 국가정보원

최근 국가정보원의 활약이 눈부시다. 국가정보원은 검 ·경 과 함께 2008년 9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의로 ‘ 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활동가 6[7]명을 체포하고 40여명의 검·경 수사관과 경 을 동원하여 중 사무실과 서울실천연대, 한국민권연구소, 6·15 이(TV), 6·15출 사, 부산·광 주 지방사무실 그리고 단체대표 간부들의 자 과 사무실 모두 24[25]곳을 수색하여 터 와 책, 문건, 방송장비는 물론 통장까지 수했다.⁴⁵⁾

국정원은 이 단체의 이지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6·15 이에 한 관련 게시물이 올라온 것 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고무·찬양죄’ 위반 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려졌다.⁴⁶⁾ 국가보 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도 기된다.⁴⁷⁾ 아울러 국정원은 ‘찬양·고무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 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의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⁴⁸⁾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8조인 ‘회합·통신죄’ 도 거론된다. 이 단체의 한 구성원이 2004년 이 에서 열 민간교류 실무회담에서 한 민화협 관계자를 만나 주한미군 수 공대위를 제안 받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실천연대가 올해 초부터 독일 를 에 사 는 한 동포로부터 <로동신문>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받은 것도 문제 삼는 것으로 려졌다. 그러나 실천연대는 “2004년 만 은 가된 것이었고, <로동신문>은 연구용이며 인터 을 통해 어렵 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 다.

당사자인 실천연대가 아닌 외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실천연대가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는 단체이다 보니 한 관련된 참고자료가 많은 점을 국정원이 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천연대 내부에서는 불집회와 보안법을 연결시 려는 의도를 의심하 고 있다. 실천연대는 “공안당국이 우리를 이적단체로 정하고 불을 배후조종했다는 큰 그 을 그리 고 있다”고 주장했다.⁴⁹⁾

45) 한겨레, 2008.9.29자; 경향신문, 2008.9.29자.

46) 2007년 정보통신부는 실천연대 에 400여건의 한 관련 게시물을 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실천연대는 “정통부에서 제를 요구한 게시물은 누리 들이 자발적으로 올 것으로 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그리고 6·15 이에 한에서 제작한 로그 을 그대로 올 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겨레, 2008.9.29자. 실천연대 관계자는 “6·15TV는 정식 언 론사로 돼 있으며 실천연대와는 독립된 기관이고, 우리의 일부 주장이 한 과 유사할 수 있지만 독자 적인 단과 연구의 결론일 뿐 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 다. 경향신문, 2008.9.29자.

47) 경향신문, 2008.9.29자.

48) 이 단체 대표는 “수수색 당시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이 적용됐냐고 물어보니,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 다”고 전했다. 한겨레, 2008.9.29자.

49) 민주노동당 박승 대변인은 “정부가 불 국민과 정적을 통제하고 들이는 수단으로 보안법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 했다. 경향신문, 2008.9.29자. 연행자들을 견한 담당 변호사도 “실천연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 의에 참여하면서부터 보수단체 에 의해 불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고 말했다. 이 단체 대표는 “실천연대는 통일부에 가입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합법적 단체”라며 “우리 단체가 이적단체라면 공안당국은 8년 동안 도대

한편 국가정보원 2 장은 2008년 10월 1일 사정당국의 공안 수사와 관련, “한국 내에 친 좌 세력 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⁵⁰⁾ 날 독재정권 시절에 던 물에 선진화로 치장한 이다. 국가정보원은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院訓)을 10년 만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으로 바 었다. “기존 원훈이 정보기관의 기능과 사명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새 원훈에서 ‘자유와 진리’는 정보기관의 지향점을, ‘무명의 헌신’은 정보활동의 원칙과 사명감을 담았다는 것이다.⁵¹⁾ 그런데 사상·이념·표현의 자유 없는 자유와 진리가 가당 나 한 가.

동시에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을 매개로 구시대 ‘국가보안’시장(市場) 회 및 활성화, 과거에 몇 레 시도하다 실패했던 ‘대 리’시장 개 , 법질서 충성주의에 힘입은 ‘사정’시장 개 , 대통령의 기업 들리 정책을 후광 삼은 ‘기업’시장 재개 ⁵²⁾ 10년만에 아온 호 을 만 하고자 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008년 9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계 을 보면, 오는 11월 말 까지 검 이 지 하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6개 사정기관 합동수사 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계 이 다. 한국처럼 국정원에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와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여 비밀정보기관에 게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그에 대한 지 목소리도 다. “게 타포와 KGB 강제수사권을 겸비한 정보기관은 예외 없이 공포기관으로 바뀌었다는 역사적 경험 외에도 비밀보 안을 생명으로 삼는 정보기관과 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은 속성상 양 립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⁵³⁾ 그렇다면 국정원은 일반적 부패비리 수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은 국정원법상 국내 '보안' 정보에 한정되어 “대공, 대 , 대정부 전 , 방 , 대 리, 국제조직범죄”로 제한된다. 따라서 국정원이 부패비리 사정기관 합동수사 에 합류 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드는 중요한 범법 행위다.⁵⁴⁾

체 무엇을 한 거냐”고 비 했다. 한겨레, 2008.9.29자.

50)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하여 항의 방문을 한 자리에서 “실정법이 있는 한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 다고 한다. 그리고는 “법원에서 밝 내용에 따르면 국가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협 을 끼칠 이적성 있는 단체라고 했다”면서 “한 달 뒤 수사결과 경위와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 말할 수 없다”, “법원이 사노련 사건과 같은 법원이다. 격하게 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 달 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실천연대 간부들에 대 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감안하면 실천연대의 이적성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김 장은 전날 국회 정 보위에 출석해서도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그간 내사해온 사건으로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 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2008.10.2자.

51) 1961년 국정원 전신 중 정보부가 설된 이래 국가안전기 부 시절까지 37년간 부훈(部訓)은 ‘우리는 음지 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는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원훈도 ‘정 보의 국력이다’로 변경됐다. 기관 명칭과 원훈의 변경은 게 서 군사독재정권과 민주화자유주의정권, 신보 수주의정권 을 상 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우, “[세상속으로]어색한 ‘자유와 진리’”, 경향신문, 2008.10.8 자.

52) 국정원이 동향과 이라는 이유로 주요 그룹들을 일주일에 두세 레 방문해서 투자·고용 계 을 과 해, 무언의 력을 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 2008.9.29자.

53) 광노현, “6개 사정기관 합동수사 운영계 , 국정원법 위반”, 레시안, 2008.9.26<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26165706>, 검색일: 2008.10.6.

54) 광노현은 2007년 7월 국정원의 ‘이명박 TF’를 운영하고 이명박 당시 후보의 지인 93명에 대해 총 406건의 금융계좌와 자료를 보았노라고 고백한 사실이 드러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패비리 정보수집은 현대의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며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적극 두 했던 것을 문제 삼는다. 광노현, 앞의 .

2) 국군기무사령부

로그에 사회과학 서적 관련 을 올려놓고, <마르 스의 명적 사상> 서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의(이적표현물 소지·배포)로 기무사의 수사를 받았던⁵⁵⁾ 군 제6군단 소속 전아 무개 전 하사는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은 열 짓을 “회유와 협박 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던 같 았던 시간”으로 기억했다. 전씨는 무엇보다 양심에 반하는 자백을 강요받았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진 을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에는 바로 책상에서 각종 문건을 내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읽으라고 강요했다”며 “어쩔 수 없이 줄 쳐 놓은 부분을 소리내어 읽 으면 고스란히 진 조서에 자백을 한 내용으로 기 했다”고 말했다. 전씨가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던 10여일 동안, 이런 자백 강요는 하루에도 수 례 이어졌다고 한다. 전씨는 또 기무사 수사관의 요구 대로 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또는 조직사건과 연루시 수 있다며 진 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내가 ‘이주왕’이라는 한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온라인 대화명으로 는 것을 보고 ‘평소 사회 주의 학생운동을 하면서 가명 사용이 필수적이었고, 보위수칙상 그렇게 돼 있어 가명을 사용한다’고 조서에 적는 것을 보고 기가 다”며 “‘보위수칙’이니 ‘원전서적’이니 하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사용 하며 나를 한이나 조직사건에 으려는 모 이었다”고 말했다. 때때로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 다. 전씨는 “기무사 수사관들도 부사관이어서 ‘부사관 후배에게 심하게 하고 지 않다. 법에도 정이 있으니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 선처를 받도 돕겠다’고 말하는데, 그때가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 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 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런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약해졌었 다”고 어 다. 전씨는 군검 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모든 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 지만, 지난 18일 무 부적합 정을 받아 전역했다.⁵⁶⁾

2. 법질서 유지기관의 공안 강화

1) 검

검 도 제왕의 환 앞에서 충성경쟁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 총장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 발 앞서가고 평검사들은 말없이 법무부장관과 검 총장에게 종할 뿐이다.”⁵⁷⁾ 조중동 광고주불매운동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 ‘PD 수 ’ 보도,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검 ’로서의 화려한 신고를 마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맞 뜨던 호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권력기관의 쇠 와 함께 권력 으로 전락하 으며, 현직 대통령과 그 친인 , 집권당의 실세, 재벌 사회적 강자에 친하고 정부를 비 하는

55) 한겨레, 2008.7.16자.

56) 전씨는 “공안당국의 반인권적인 수사 관행을 없 기 위해”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게 이다. 한겨레, 2008.8.28자.

57) 하태훈, “다시 살아나는 ‘정치검 ’”,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2008.9, 16 .

이나 언론, 직전 대통령에게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한다.

더 이 대검청은 지난 2005년 지했던 공안3과를 4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공안부는 2008년 9월 17일 이르면 내년 3월 공안3과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법무부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은 불시위와 조·중·동 광고주 박 운동 올해 초부터 각종 공안 사건이 이어지자 공안1·2과 체제로는 업무 부담이 많다고 단해 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토 중이지만 조직을 증설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 언제 신설할 수 있을지 확실하진 않다”면서도 “러를 포함해 새 게 장하는 우리 사회를 유 하는 요소들에 대한 관 및 조기경보 기능을 주된 것으로 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안3과는 부장검사 과장과 연구관 검사 1~2명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려졌다. 1994년까지 공안1·2·3·4과 체제로 운영되던 대검 공안부는 94년 공안4과가 없어진 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공안3과도 지됐다. 현재 아 있는 공안1과는 대공·선거사범을 전담하고 공안2과는 학원·노동사범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⁵⁸⁾

2) 경

경 의 충성도는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서민들의 불만 표출을 원천봉 하는 것이다. 불집회에 대한 전면전 선포와 ‘대통령궁’으로의 근 을 막기 위한 ‘명박산성’이 대표적인 상 사건일 것이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준법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 위의 집시법을 지으려 한다. 평화시위구역 지정, 집회와 시위에서 마스크 와 면 금지, 각목 제조·운반·소지에 대한 처벌, 소음 제 강화 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경 은 2008년 9월 26일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의 오세 연세대 명예교수와 노동운동 활동가 7명을 긴 체포하여 “이들이 변란을 선전·선동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과 제3항(이적단체 구성) 위반 의를 적용하려 했다. 이와 관련 경 안에서 “무리한 법 적용”이란 비 이 나올 정도이다.⁵⁹⁾ 더구나 경 은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정하면서⁶⁰⁾ 불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것을 두고 불집회에 색 을 우려는 조

58) 한겨레, 2008.9.18자.

59) 한 경 고위 간부는 “우리도 이 이념적 행동과 주장은 여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지방경 청의 한 관계자는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국 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국 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8.8.28자.

60) 하지만 이른바 ‘친 성향’과는 정반대인 ‘정통 사회주의 계열’ 단체인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게 한 다는 점을 면서 반국가단체(한)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단체를 말하기 때문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우든 극좌든 관계없이 특정 성향을 불법화하는 요건으로 ‘명백·현존하는 위협’이라는 대를 다”며 “문서에 과격한 용어가 있다고 그 자체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령으로 어떤 국가를 지향 하든 간에 그 조직 결성 자체가 현재 사회질서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초래할 때 처벌하는 게 최소한 오이시디(OECD) 국가들의 관례”라며 “심지어 대만도 최근 모 동주의 당 결성이 가능하다는 결을 할 정도”라고 불 다. 한겨레, 2008.8.28자.

집도 보이고 있다. 한 경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 단체는 불집회에 국가를 부정하는 논리에 입각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참석했다”며 “특히 폭력수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서울 인동 대공분실이 아닌 서울의 한 경 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노련 회원의 경우 단체와 불집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⁶¹⁾ 이미 경 의 보안부서에서는 불집회 연행자의 과거 전력과 정치적 성향을 히체 하고 있었다. 서울경 청 관계자는 “한국진보연대 불집회 주도 단체와의 연관성을 아보기 위해 보안과에서 연행자들의 보안법 위반 전력, 과거 활동 내역을 조사해 수사부서에 통보한다”고 말했다. 경 청 보안수사대는 집시법 위반 의 피의자를 직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불의 위세가 아들기 시작한 8월 이후 노동·시민단체들 사이에선 ‘공안기관이 간 단 조직사건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졌다. 한국진보연대 반미 성향 단체와 민주노총 지도부 을 불의 배후로 지목해 체포하는 ‘공안몰이’가 거세지자, “그 결정 이 나올 것”이란 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이번 ‘사노련 사건’은 그동안 전으로 밀려 있던 공안기관들이 새 정부의 코드에 맞 ‘충성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⁶²⁾

3. 사법부의 공안정국 방관 ‘확실성’

1)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단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위헌·무 의 법 인지에 대하여 일관되게 합헌으로 정하 다.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①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② 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 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 게 하는 ③반국가활동을 제한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 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정을 그 법 의 목적에 비 어 ④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수 없으며, ⑤양심의 자유, 언론·출 의 자유 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수 없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4367 결, 1999. 12. 28. 선고 99도4027 결, 1993. 9. 28. 선고 93도1730 결 참조).⁶³⁾

먼저 지적할 것은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칙’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계이다. 양자

61) 한겨레, 2008.8.28자.

62) 한겨레, 2008.8.28자.

63) 서울고 법원 2004. 7. 21. 선고 2004노827 결

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력관계를 명하지 않은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칙’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위에 놓고 있다(①). 과연 양자는 충돌관계에 있는 것인지, 충돌하는 경우 해결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대한민국헌법의 ‘근본이념’인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전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 사상의 자유시장론(Marketplace of Ideas)임은 누구나 아는 일인데, 이에 대하여는 작은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더 이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는 내용을 가진 법인지 양자 사이에 연관관계가 존재하는지도 명확하게 명하지 않았다. 법원이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확립된 레라 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특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뒤 을 게 아니라 인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정 변화가 없는지 임없이 고 논증해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자명한 사실로서 전제할 뿐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②).⁶⁴⁾ 한으로 인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한으로 인한 위협이 증대하는지를 논증하고 있지 않으며, 더 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은 직 적으로 한의 위협과 연관이 없는 조항인 점을 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의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 전(休戰)’ 상 임을 고려하면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최근 관계의 개선은 더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만 의 위협상 은 아니라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반국가활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표현’과 ‘행위’ 구 없이 일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③), ‘합리적 해석’을 전제함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④).

마지막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을 해석하면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언 하고 있지만, 그것은 수사적일 뿐이어서 ‘일반적 법 유보’에 대한 한계 구실을 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⑤). 그동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법 인 국가보안법을 계속 존치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형법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지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단하지 않음으로 과 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인권 제한을 위한 만능열쇠로 전락하 다.

2) 한관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적 정에는 한의 반국가단체 성격이 근거에 자리 고 있다. 헌법재 소는 한에 대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대 적화노선을 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론’을 전개하 다.⁶⁵⁾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 소의 해석이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범조화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평가⁶⁶⁾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현실적 토대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반국가단체로서 한

64) ‘ 한의 무력 침적화통일론’의 구성에 대한 비 은 심재환,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한에 의한 무력 침적화통일론의 구성, 『2004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4. 12. 6, 160-200 참조.

65) 헌법재 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병합) 결정

66) 권영성, 앞의 책, 128 .

의 존재이며, 그로부터 국가안보지상주의가 인권을 최우선시해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소소를 결을 지배하고 있다. 나하면 영토조항에 대하여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형성이라는 미래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역사적·미완성적·개방적·로그적 성격을 가진 조항”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⁶⁷⁾

3) 이적단체와 이적표현물 정기준

대법원은 이적단체에 대하여 그 구성요건을 격히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적표현물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단해야 한다고 원칙론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의 목적 및 유해성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어서 그 구성요건을 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1099 결정, 1999. 10. 8. 선고 99도 2437 결정, 1999. 9. 3. 선고 99도 2317 결정 참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결정,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⁶⁸⁾ (줄은 인용자)

그러나 과연 그러한 원칙이 명확한 기준으로 논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⁶⁹⁾ 예를 들어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아래 “한총련”으로 줄임)을 이적단체로 정한⁷⁰⁾

67) 도회근,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헌법 법과 헌법현실: 권영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법문사, 1999, 867 아래 참조; 최 동,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통일지향적 해석론」,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I』, 르네상스, 2002, 62 도 참조.

6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0도987 결정(본문에서 2004년 결은 선고일일과 법원명으로 표기함. 예 대 “7. 9. 대법원 결정”)

69) 공안당국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이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정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대한 법원의 단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결을 보면 조국통일범민 연합(범민련) 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민 민주 명당(민 당),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는 이적단체로 분류됐다. 반면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민 통일 국청년회(민 청)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 선고를 받았고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지만 조직적 결합체에는 이르지 못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단을 받았다. 2007년 대법원은 의료단체로는 처음으로 1·2심에서 이적단체로 정됐던 진보의련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4년 민 청에 대해서도 “1987년 김대중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적어도 발 당시 이적단체성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적단체로 전환됐다는 표를 아 수 없다”며 원심을 다. 반면 올해 4월17일 임동 범민련 본부 전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정한 기준 입장을 따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민련은 피고인이 가입할 당시에 한의 활동을 선전·동

핵심근거 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9기와 제10기 한총련이 강령에서 제하 음에도 여전히 이적단 체로 정하 기⁷¹⁾ 때문이다.⁷²⁾

이적표현물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그 정기준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맞 고 있다. 물론 그 앞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지만, 그 위협의 ‘명백성과 현존성’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반대 현수막’에 대하여 표현 자유로 호하는 2002년 서울고 법원 원심 결을 파기한 것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위헌이 아니고 그 존재의의가 있으므로 반민 ·반통일·반인권적 법으로 비난되어서는 안된다’는 근거에서 다.⁷³⁾

4. 제왕에 러 민의를 저버리고 있는 국회

국회가 통법부가 된 것이 어제오늘이 일이 아니지만,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의원입법의 이면이다. 외국 입법 기 입법, 자구 수정 입법, 명목 없는 기관의 대리인 노릇,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소시 거나(예 대 국군 외국 파견 관련 국회 동의 절 간소화)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인 소수파의 반대권 보장과 민주적 합의 원칙을 저버리는(예 대 법안의 위원회 심의절 간소화와 본회의 자동상정) 입법 이 그것이다.

나는 국가보안법 지운동의 리를 60년 전 제헌국회에서 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 했던 일단의 국회의원들이 그들인데, 그때 이미 국가보안법 지의 논거는 골격을 았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형벌권으로 대처함으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거이다. “사상에는 사상을 가지고 극 해야만 되지 완력으로는 이것을 막아 도리가 없다”는 박해정 의원의 발언⁷⁴⁾은 존 스 어 밀의 사상의 공개시장론과 그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각인시 다.⁷⁵⁾ 이것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용할 수 없다’는 로건을 참칭하

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 을 끼칠 위험성을 가져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단했다. 그러나 13명의 대법관 중 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은 “실질적 해 을 끼칠 위험성이라 함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 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다. 이들은 “해당 단체가 집단의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정한 것이 오로지 무장봉기 자유민주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일 때에만 이적단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격한 대를 제시했다. 지난달 서울중 지법은 오세 연세대 명예교수 사노련 회원 7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 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 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인터 한겨레, 2008.9.29<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2928.html>, 검색일: 2008.10.6.

70)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95 결

7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결. 그 근거로서는 ‘여건의 변화에 적 한 부득이한 조치이거나 합 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가 장 배제해야 할 ‘불신의 선입견과 편견’이 대법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7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2004, 372

73)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371 .

74) 이어진 발언에 ‘국민사상정화운동 후 중 처벌’의 제한이 있었음을 불인한다(「제105 회의 」, 『제헌국회 속기 2: 제61호-제128호』, 선인문화사 영인, 1999, 951)(아래에서는 회의 수와 수만 밝 다).

여 반사회주의·반공산주의를 곧 자유민주주의로 이해하는 사이비 자유민주주의자의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한 통 한 반박이다.

췌, 국가보안법은 한 평화통일의 걸 돌이라는 논거이다. 박윤원 의원은 “우리 민 이 통 일만으로 산다는 이러한 지도이념이 다고 할 때에 … 천 만대에 원한을 그러한 일이 생기리 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조를 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6) 1972년헌법 이래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항들의 헌법 범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관계의 변화가 현실화한 이상 국가보안 법 존재이유는 이미 사라졌다.

췌, 이미 다른 법 이 그 구실을 다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필요없다는 논거이다. 김 주 의 원은 “내란에 관한 범죄사항에 관한 것… 선동이나 모략은 …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일반 형법에 의 하여 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보다 「형법」을 비 하여 「 교류협력에 관한 법 », 「출입국 관리법」 관련 법제가 더 정비되었음을 감안하면 존치론은 우리 법체제에 대한 모독이다.

췌,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이라는 논거이다. “민주주의 헌법은 인민의 권리 를 보장한 것입니다. 다수 일어나는 반란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헌법정신은 몰각하고 인민을 극도로 속박하는 법 을 우리 자체가 또 만드는 법이 어디 있 니까?”77)라고 신성 의원은 비 한다. 유 인권이사회가 세 례에 걸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 다.

다 췌,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봉사하는 정치적 용법 이라는 논거이다. 조국 현 의원은 “막연히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3천만 민중이 무고한 백성들이 걸리는 이 법을 만들자 고 하는 것은 아 니다. 우리 자 만대에 죄를 우리 자신이 짓고 말 것입니다.”라고 경고한다.

여 췌, 법집행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용할 우려를 제시하는 논거이다. 당 시에는 일제와 미군정 아래에서의 경 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이후 ‘막걸리 국가보안법’이 라는 표현에서 수 있 이 그러한 우려는 현실화하 다. 물론 일부에서는 격한 법집행을 통해 이 러한 우려를 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안고 있는 위 다 가지 문제가 더 본질적인 것임을 외면하고 있다.

백보 양보하여 정부 수립 초기 어수선한 상 을 국가보안법 제정 근거라고 인정하더라도,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더 이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개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국회는 입법의 과거청산 작업의 일환으로서 국가보안법 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IV. 음말

노무현 대통령은 ‘10·4선언’ 1주년 기념 공개 강연에서 “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받침하는 근

75) John Stuart Mill, 김형 김, 『자유론』, 서광사, 1992.

76) 「제108 회의 」, 996 .

77) 「제105 회의 」, 954 .

거이며, 대화의 걸 돌”⁷⁸⁾이라고 비 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이 박물관으로 가지 못하고 살아난 데다 구시대 공안정국 박물관이 통째로 되살아나고 있는 걸 보노라면,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날치기라도 주도해서 국가보안법을 지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에만 갇혀 있는 생각일 터이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 구실을 과소평가할 일도 물론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여느 치안관련 경 단속법과 근본적으로 원을 달리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 하기 위한 사상탄 법이다. 그리고 사상탄 법은 인간사고의 결정체인 사상을 정통과 이단으로 가르치고, 이단으로 못박 사상에 국가폭력의 날을 무자비하게 두른다는 점에서 어난 의미의 체제유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유지법은 지배체제를 현재의 이 시점에서 무조건 그리고 영구히 동결시 려는 집단적 광기가 법 범의 형식을 어 표출된 것이다. 지배체제가 체제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폭력의 동원체계를 미리 조직하는데 본래의 입법 지가 있는 만 , 그것이 폭력성을 게 되는 것은 개념필연적 결이라고 할 수 있다.⁷⁹⁾

최근 무한경쟁으로 인한 한 의 고단함 때문에 자살이 증가하는 것만을 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99%의 사람들은 자체가 총체적 위기에 쳐들고 있다. 그만 정권도 위기에 쳐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친자본·반민주·반인권적 정권은 CEO독재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일이 절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곧 국민 99%를 적으로 보는 ‘전투적 특권자유주의’⁸⁰⁾이다. 그것은 자본 또는 정권에 보이는 자에게는 가 없이 인권을 주장할 도 없이 법적 보호의 두리 밖으로 겨나 불법의 인을 는 ‘선진화’독재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그와 ‘연대’한 집시법, 그 배후세력으로서 공안기관과 상명하달 법질서를 강요하는 공안정권 그리고 시장 신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78) 경향신문, 2008.10.2자.

79) 국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126 .

80) 반과시 을 계기로 나타난 ‘전투적 민주주의’는 전체제 아래에서 반공산주의, 9·11 러 사건을 거치면서 반러리의 길을 득하 다. 자유민주주의처럼 이 또한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민주주의란 이름조 탈락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을 계기로 본 국가보안법

고 민 (사노련 공대위 집행위원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을 계기로 본 국가보안법

고 민 (사노련 공대위 집행위원장)

1. 사건의 배경

1) 불시위

(1) 결론(최종)적으로 불시위를 불운시 하기 위한 극약 처방 동원

- 배후설 / 광우병대책위로 책임 전가 -> 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
- 불의 의제/요구가 확장, 확산되는 것을 저지 -> 불과 민중운동을 분리
- 불의 의의와 성과를 곡, 무화 -> 불 참여자의 자발성, 능동성을 하

(2) 제2, 제3의 불 장을 사전에 단하기 위한 포석

- 예기치 못한 불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부 침 -> 대선, 총선 승리의 의의 전략
- 대운하, 공공부분 민영화 에 대한 저항 예상 -> 일시적 우회와 함께 결 돌 제거
- 정치력 회 -> 불 소강 국면을 타 적극, 강력 대처

2) 공안정국 형성

(1) 필요성(불가피성), 정당성 확보

- 기왕에 내세 던 '법질서' 확립 강행 -> 공안탄 이 아닌 정상적 절 , 과정 강조
- 이른바 ' 어버 10년' 되 기 -> 거 로 된, 뒤집 '역사 바로 세우기'로 포장
- 경제 살리기의 필요조건 -> 경제 살리기 이데올로기 강화, 일화

(2) 공안 법안, 기구 강화

- 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 죄, 집시법개 , 전자여권 진

- 국정원 역할 부활, 기무사 재가동, 백골단, 공안 3과 신설
- 공안 세력의 존재감을 되 기 위한 희생양 기, 만들기
- 공포, 감시, 억 분위기 확산

3) 사회주의 운동 장 단

(1) 단순한 과거로의 회 만든 아님

- 대중의 저항이 진화 할 가능성 생생히 목격
- 정치적 집중, 방향성? -> 민주당/진보정당은 관리 가능
- 공안탄 은 공안탄 이되 -> 그것이 전부는 아님
- 정권의 위기를 넘어 체제 위기로 발전, 전화될 가능성 배제 어려운 정세

(2) 사회주의 운동의 최근 림

- 사회주의 정치 세력들의 (공개)활동 준히 지속
- 사회주의 정당 결성 운동 가시화
- 사회주의 정치 세력들의 활동력 단순히 무시할 정도는 아님

2. 사건의 특성

1) 사회주의 운동 조직에 대한 사건

- 이명박 정부의 첫 작품 -> 민 주의 계열을 하지 않음
- 국가보안법 존재감 확인 -> 사문화, 무력화 분위기 반 시 기에 적합 단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겨 -> 명확성, 상 성 집약

2) 공개 활동 조직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 개인이 아닌 조직(이적단체)을 문제 삼기에는 한계 -> 대부분 공개 활동 양식
- 대부분의 민 주의 계열 사건 -> '과거활동'을 우려 는 원
- 공개 활동 양식, 조직으로의 감 이동 불가피 -> ' 공동선언실천연대' 건

3) 연행자 전원 영장 기각

- 거의 최초의 사례 -> 조직사건(이적단체)으로는 유례가 없음
- 무리수 / 불의 힘 / 각적인 공동 대 / 광범한 반발 / 정치적 타이
- 법원의 양심?

3. 연행 과정 및 대 과정(일지)

1) 침탈 및 석방

- 8월 26일 8시~11시 사노련 회원 8인(오세 , 양 식, 최영 , 박준선, 정원현, 오민 , 궁원/ 양준석) 동시다발 연행시도 및 수수색
서울경기 6인 자 연행, 울산 양준석 동지 서울동지와 통화 중에 서울동지 집에 경 이 들이 친 사실을 고 긴 피신, 정원현 동지 전주에서 고속버스를 세우고 연행. 8인 동지 모두 자 수수색 진행(터, 사노련 발간물, 사회과학서적 수)
- 26일 8시 오연 자 수수색
서울경기 6인 자 연행, 울산 1인 서울동지와 통화 중 서울 동지에게 경 이 들이 친 사실을 고 긴 피신, 울산 1인 전주에서 고속버스를 세우고 연행. 자 수수색 진행(터, 사노련 발간물, 사회과학서적 수)
- 26일 14시 사노련 서울 사무실 수수색
- 26일 16시 정원 , 김상기 자 수수색

2) 침탈에 대한 대

- 26일 14시 경 대문경 서 항의방문, 19시 가 을 포함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긴 대책회의를 갖고 기자회견 및 성명서 조직하기로 결정, 민변을 통해 변호사 권을 조직 진행.
- 27일 11시 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 및 석방촉구집회를 진행/ KBS, MBC, YTN, 한겨레, 경향, 참세상, 민중의 소리 다수 언론 재.
- 정당/ 노동 단체/ 노동조합/ 현장조직 성명서 조직 및 발표 : (9월 1일까지) 23개 조직 탄성명서 발표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자지부, 이주노조,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기아 금속노동자의 힘, 현대 민투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노동자투쟁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평 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현장실천 사회변 노동자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사회당,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전국불완전노동연대, 전국학생행진(진),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사노련)

- 27일 18시 대책회의 및 공대위구성 결의 (노동자투쟁연대, 구속자가 대책위,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진, 사회실천연구소, 사회당, 해방연대(준), 전비연, 민노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민가협, 전해투, 사회주의노동자신문, 다함께, 이 드노조, 비정 공투단, 노정협, 노협, 노학연, 노 연대, 학사정연, 노사과연, 서부비정 직 터, 연세대 '살 ', 노학연 26개 단체 및 개인들이 참여 사노련 공대위를 구성하고 공안탄 에 맞서 공동대 할 것을 결의)

- 국가보안법 적용 탄 에 대한 대중의 반 : 불을 통해 정치의식이 성장한 시민들의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탄 에 대한 반 은 전 움 려들지 않고 오히려 탄 을 탄하고 조소함. (다음아고라에 탄 이 도했고, 사노련 게시 에도 원 이 다수 올라 . 이를 반영하여 언론의 재 역시 폭주했고, 법원은 공안탄 이 들지 않는 상)

- 27일 23시 연행자 석방 : 노동운동 진영의 긴 한 대 및 국보법적용을 통한 공안정국조성 시나리오가 대중적으로 들지 않고 조소를 받는 상 에서 석방은 불가피했음 (7명의 연행자 석방되고 20여명이 모여 종로경 서 앞에서 약식 집회진행)

3) 수사에서 밝 진 8월 26일 연행이전 감시사 상

- 2월부터 시작된 사 : 사노련 회의, 수련회, 출범식 에 참가한 인원수까지 정확히 파 할 정도로 '사상검증'을 준비하기 위한 사 을 체계적으로 진행함. 주로 이 일 및 공개적으로 발행해온 이론지/신문/ 책자 의 내용을 작위적으로 분석함.

- 5월초부터 집중적인 사 진행 : 불집회, 공공부문 노동자 대회 에 참가한 사노련 회원들에 대한 사진 증 및 핸드 통화내역, 핸드 위치 적, 이 일 사 , 공개 월레토론회 참가자 사진체증, 사노련 회의자료 분석 이 진행되어 왔음.

- 불 탄 : 불이 거세게 타오르자, 불 배후세력 운운하면서 불운동이 확산되고, 노동자운동과 결합하지 못하도 인 기 위한 여론작업이 진행되었음. 수사에서 많은 부분이 불집회 참가부분에 대한 조사, 폭력 선동 여부에 대한 조사에 맞 어져 있음.

- 노동운동 탄 : 비정 직 투쟁에 결합하여 완전한 를 주장하는 신문을 근거로 경제를 위기에 뜨리고 사회파탄을 조장하여 국가변란으로 나아가도 선동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

4) 석방 이후 진행되는 사 및 '국가변란세력' 인 기

- 경 출석요구 및 조사 : '이적단체', '국가변란세력'으로 인 기 위한 심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 오직 국가변란을 제1목적으로 하는 폭력세력임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사노련 동지들은 공개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 밝히고 있으나, 그 외의 사실들에 대해 비권을 행사하고 있음. 수수색을 당한 3인의 동지들에 대해서도 수수색물 분석을 위한 입회를 요구하며 4 에 걸쳐 출석요구서 발송하고 있으나 거부함.

- **계속되는 감시사** : 9월 5일에 11시에 있었던 “단협파기 노조탄 재능고 자본 탄집회”에 참가한 오민 동지가 집회인사말을 하자 대문경 서 형사들은 불법사진 증을 시도하다 집회참가자들이 항의하자 재능고 본사 건물로 새끼들처럼 었다가 끌려나올 수밖에 없었음. 이 드 집회에 서도 미행과 감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 **국가보안법 적용 확대 협박** : 검 은 9월 8일에는 불운동에 주도적으로 결합했던 다함께와 진보연대 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공안정국으로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 ‘ **위사실**’유포 : 9월 10일에는 법원공무원노조 부산지부 조합원이 사노련에 수사정보를 건 다는 ‘ 위사실’을 유포하며 마치 히 러가 대중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도 만들기 위해 사노련이 국가 기구에까지 을 히고 있는 위협한 러조적인 것처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음.

5) 사노련 공대위 주요활동

- 9월 3일 기자회견 (서울중 지검앞)

- . 재영장 청구 방침 탄, 국가보안법 를 위해 싸울 것을 선포
- . 40여명 참가

- 9월 4일 공대위 발 및 토론회

- . 서강대 다산관/ 60여명 참가
- . 사노련탄 분 , 국보법 , 불탄 저지를 위한 대토론회(서강대 다산관)

- 9월 18일 기자회견

- . 주최 : 사노련 공대위, 국보법 지 국민연대
- . 내용 : 국가보안법 적용 이적단체 의 조사, 국가변란 의조사 탄/ 진보연대, 다함께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 기도 탄/ 불탄 탄

- 9월 27일 탄대회

- . 주최 : 사노련 공대위, 국보법 지 국민연대
- . 명칭 : 국가보안법 앞세운 공안탄 탄대회

. 약 300명 참가/ 하반기 국가보안법 투쟁 결의

4. 사노련 사건으로 본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확인 필요

- 결코 사문화, 무력화되지 않았음을 확인
- 국가보안법 적용이 특히 지금부터는 더 더 본격적으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과의 결합을 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것임
- 국가보안법 자체는 물론 각종 변형된 형태로 전이되고 있는 상 을 종합적으로 주시해야
-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 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안법 유지, 강화시도는 더 드세어질 것임
- 국가보안법이 단지 민 주의 운동 진영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

2) 기존 국가보안법 지 운동의 한계

- 사건 , 당사자 대 중심
- 법 적 대 을 넘어서는 정치적 대 의 약
-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전체 원의 공동 대 미약
- 대중화, 일상화, 지속화의 계기 포 과 기 투쟁의 부재

3) 현 정세와 국가보안법 지 운동과의 관계

- 공안탄 저지(민주주의) 투쟁과의 연대 강화
- 국가보안법 자체를 문제 삼는 독자적인 운동 름 형성
- 정치사상, 정치활동의 자유 쟁 에 대한 공감대 형성 확장
- 사회주의 세력의 민주주의 투쟁에서의 헌신적, 지속적 역할 제고
- 사회주의 운동의 전면화, 대중화를 통한 정면 돌파 불가피

4) 이후의 계

- 12월 1일(국가보안법 제정 60년), 12월 10일(세계인권 선언의 날)을 지점으로 상정하고 지금부 터 그 때까지의 일련의 조직화, 투쟁 계 논의 중
- 사노련 수사 진행 진행과 결부된 대
- 여기서의 성과를 바 으로 이후 중장기적 로그 설정

이명박 정부의 공안사건 분석

고 재 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명박 정부의 공안사건 분석

고 재 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불집회 이후 불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간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안사건이 줄을 고 있다.

불집회 이후 발생한 공안사건의 내용과 현 을 정리해 본다.

2. 불집회 이후 발생한 공안사건의 내용과 현

(1) 불집회 관련 사건

가. 처벌대상행위와 대상자

대책위 관계자, 인터넷 운영자, 광고중단운동참여자, 민주노총 간부, 폭력행위자, 각종 설 유포자, 진 거부 의경, 유모 주부 불집회를 동해 온 중심 단체와 인물들과 상 성을 갖는 인물들과 행위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나. 처벌 현 (2008. 10. 2.까지 집계, 민변)

구속 기소 34명, 불구속 기소 14명, 약식기소 90여명, 모두 138명이 형사처벌 되었다. 이 중 1심 결이 선고된 경우가 10여 건이고, 항소심까지 마친 사건도 있다.

반면, 민변은 지난 6월 과 진 을 당한 피해자를 모집해 진·의경들과 경 간부들을 검 에 고소·고 발했다. 서울중 지검은 경 폭력 관련 사건 23건을 수했으나 대부분 서울 종로경 서에 넘겨 아 직까지 경 조사 단계에 있다고 한다.

(2)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가. 피의사실

(가)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으로서 지 통 체제를 갖 단체(국보법 제2조)”를 말한다.

사노맹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사노맹 사건 판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cf) 이적단체-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국보법 제7조 제3항).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사노맹 사건 판결).

(나) 집시법 위반

불집회 참가, 유인물 배포

(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사노련에 대한 피의사실을 받침하는 중요 자료는 사노련 이지 에 게재되어 있는 우리의 입장, 대중행동강령, 약, 사노련이 발간하여 매하거나 배포한 신문, 유인물, 책자 이미 사노련 스스로 공개한 자료들과 수한 관련자들의 이 일 인데, 이 일의 내용은 사노련의 설립을 진하는 단계에서 강령 을 논의한 내용을 이 일로 주고 받은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증거자료는 거의 모두 사노련이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에 근거한 것들이다.

나. 조직현

(가) 명적 사회주의를 위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내세우며 2008년 2월 23일 출범

(나) 대중행동강령(일부, 사노련 이지)

1. 비정규직 철폐

-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
- ② 온전한 정규직화

- ③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 노동시간-고용 연동제, 생활임금 보장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①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 ② 생활임금 쟁취
- ③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 ④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 해소
3.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4.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자!
전투적 선진노동자운동을 건설하자!
5. 노동자 정당방위대 상시 구성
6. 노동자 생산통제
- ①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
- ② 영업비밀 철폐·노동자 산업통제!
- ③ 공장위원회 -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의 조직적 표현
7. 몰수·국유화
- ① 재벌 대기업 몰수·국유화
- ② 은행 및 금융업체의 몰수·국유화/신용체계의 국가관리
- ③ 국가 기간산업 국유화
8. 제국주의 반대! 전쟁 반대!
- ① 제국주의 전쟁 책동 분쇄 - 제국주의 군사점령과 전쟁위협 중단, 미군의 해외주둔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 ② 반동적 수단으로 제국주의에 맞서는 것 반대 - 핵무기 반대, 테러주의 반대
- ③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는 노동자 국제연대 건설
- ④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 전쟁위협 중단,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실현, 주한미군 철수, 군사비 사회보장 전환
9. 노동자정부

(다) 우리의 입장(일부, 사노련 이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노동자계급이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다음과 같은 혁명적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공장과 사무실,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노동자와 그 밖의 피착취 근로인민의 대표자기관을 국가의 최고권력으로 세운다.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이 이 기관으로 단일하게 통합된다. 이 기관은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을 직접 선출하며, 그들을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선거 및 대표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 상근대표자들의 임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단, 상근대표자들의 임금은 일반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않는다. 공무원의 임금은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 (2) 노동자와 그 밖의 인민의 대표자나 공무원이라는 직위는 더 이상 직업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거나 자신을 선출한 선거인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소환되어 자신의 직장으로 복귀해야만 한다. 대표자기관과 정부의 모든 문서는 완전히 공개한다.
- (3) 경찰과 상비군은 폐지하며, 이를 노동자와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한다. 이 민병대는 성의 구별 없이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되며, 이들이 군사훈련이나 순찰, 간호, 노인부양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한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계산해서 국가가 임금을 지급한다. 민병대 안에서는 어떠한 계급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휘관은 민병대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민병대원들은 언제든지 지휘관들을 소환할 수 있다.
- (4) 진정한 지역자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지역 주민들은 위의 조치들에 기반을 둔 지역대표자기관과 지방정부를 스스로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특수한 지역적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권한을 행사한다.
- (5) 공장·광산·선박·병원을 비롯한 자본가소유의 모든 생산수단과 은행·보험회사·증권사·백화점을 비롯한 자본가소유의 모든 교환수단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전환'시킨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다.
- (6) 국유화된 모든 산업과 은행을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조직하여 노동자국가가 계획적으로 운영한다. 각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한다. 은행예금은 모두 공개하며, 비자금·부동산투기·세금포탈 등 노동자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획득했다는 것이 증명된 예금이나 착취자들과 반혁명분자의 예금을 빼고는 모든 예금은 완전히 보호한다. 단, 노동자정부가 규정한 한 달 최고생활비 이상을 초과하는 예금의 인출은 노동자정부가 그 용도의 적합성을 인준한 뒤에만 가능하다.
- (7) 한 시간 이상의 중간휴식을 보장하는 6시간 노동제.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노동의 경우, 일일 노동시간을 4시간 이하로 줄인다.
- (8) 전체 산업에서 주당 65시간 이상 연속적인 휴식시간 보장. 공휴일을 빼고도, 일 년에 32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한다.
- (9) 모든 잔업과 특근 금지.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노동 폐지. 변형근로제는 완전히 철폐한다. 단, 특별한 기술적 조건 때문에 야간노동이 꼭 필요하다고 노동자조직들이 인정하는 산업의 경우, 야간노동이 4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예외를 둔다.
- (10)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일일 노동시간을 4시간 이하로 제한하며, 건강에 해로운 산업과 야간근무에는 청소년 고용을 금지한다.
- (11) 모든 성과급 임금제도를 폐지한다.
- (12) 성과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한다.
- (13) 건강에 유해한 모든 산업에서 여성노동의 금지. 여성은 출산 전 8주, 출산 후 12주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 (14) 모든 작업장은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탁아에 필요한 시설과 인원을 둔다. 탁아모와 임신부에게는 2시간마다 반 시간 이상의 유급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부모를 합산하여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한다.
- (15)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전면 확대하며, 보험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 (16)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임금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임금을 확립한다. 이외에 노인, 고아, 편부모 가정, 장애인, 청소년 가정, 미혼모, 자연재해 피해자 등을 위한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정부가 확립하며, 이 제도를 수혜대상자들의 자주적 기관이 통제하고 운영한다.
- (17) 모든 형태의 임시직 고용을 금지한다.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노동의무제를 도입한다. 국가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18) 모든 외국인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와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19) 법원의 허락 없이, 그리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요구만으로도 이혼을 보장한다. 국적·성별·동성 동본 등 결혼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한다.

(20)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교육 도입. 모든 학생은 국가의 비용으로 교재, 급식, 학용품을 제공받는다. 가장 중요한 여러 생산분야에 익숙하게 하는 종합기술교육과 집단적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을 내용에 꼭 포함시켜, 학생들이 생산적 노동과 국가의 공적 활동에 익숙하도록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각 지역의 자치기관이 관리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자주적 기관이 학교를 운영한다. 학교의 모든 관료적 위계질서는 해체한다.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21) 의료는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예방의료 중심으로 재편한다.

(22) 가족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여분의 주택은 국가가 몰수한다. 몰수된 주택은 가장 열악한 주거조건에 있는 노동자, 빈민에게 가장 먼저 제공한다.

(23) 언론·집회·파업·결사·사상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기관과 출판사, 공공건물은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집회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4) 모든 농지는 국유화하지만, 자신의 농업도구를 소유할 권리와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사용'할 권리를 농민에게 보장한다. 단, 농업자본가의 농업도구, 시설과 자신의 노동을 통해 경작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한 사용권은 모두 몰수한다. 이상의 조치들과 관련된 구체적 판정은 각 농촌에서 구성되는 농업노동자와 빈농 대표자기관이 내린다.

(25) 농업노동자와 빈농을 공동노동을 통해 생산하고 각자의 노동량에 따라 분배받는 생산협동조합으로 조직하며, 이 조합을 가장 먼저 지원한다. 소농과 중농의 경우 오직 모범과 설득으로만 생산협동조합으로 조직하며, 그들이 생산협동조합에 참여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농업을 집단적 농업으로 재조직한다.

(26) 북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탄생시킬 북한 노동자국가와의 노동자계급적 통일을 추구한다. 외교문서는 전 세계에 공개하며, 외교상의 모든 비밀은 철폐한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

(라) 약

제3조

1.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선전·선동
2. 노동자 투쟁 지원·연대와 정치적 지도, 정치투쟁 주도
3.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하는 개인·단체 규합
4.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준비하는 강령 연구
5. 전 세계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과 교류·연대
6. 사회주의 활동가로서 회원의 사상·실천·문화 역량 강화
7. 그밖에 우리 조직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다. 사건의 진행경과

2008년 8월 28일 운영위원장 오세 교수 6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 으나,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 중

(3) 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가. 피의사실

- (가) 이적단체(실천연대) 구성, 가입
- (나) 대의원대회 개최 관련를 개최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 선동 및 이에 동조
- (다) '615학원'을 개최하여 찬양, 고무, 동조
- (라) 일 전진대회 개최하여 선전
- (마) 실천연대 내부 사상학 지도 을 통해 찬양, 선전, 동조
- (바) 대중의식화 사업 전개하여 찬양, 고무, 선전, 동조
- (사) 회합통신, 잠입탈출, 편의제공, 회합통신, 위사실날조유포

나. 조직현

(가) 소개(실천연대 이지)

실천연대는 2000년 남북 두 정상의 만남에서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통일에 기여하고자 2000년 10월 21일에 결성된 민간통일운동연대단체이다. 단체 명칭도 '공동선언(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고 하였으며,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 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자주권 실현 사업,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연대협력사업 등을 전개하며 8년 동안 활동한 단체이다.

최근엔 촛불정국에서 인터넷생방송을 주로 해온 6.15방송국이 실천연대의 유관기관으로 새롭게 설립되었다.

(나) 강령(실천연대 이지)

1.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2.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4. 한국 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
5.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각계 각층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다) 약(실천연대 이지)

제3조(목적사업) 실천연대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 사업
- ②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

- ③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의 간섭 배격, 전쟁 책동 분쇄를 위한 사업
- ④ 민중기본권 보장, 민권 피해 구제 사업
- ⑤ 정치개혁을 위한 제반사업과 유권자 정치 참여운동, 정당운동에 대한 연구·교육 사업
- ⑥ 남북의 법, 제도적, 물리적 분단 장벽 제거와 자주교류, 화해협력 사업
- ⑦ 남북 경제공동체 발전과 민족통일문화 창조 사업
- ⑧ 기타 실천연대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

다. 사건의 진행경과

2008. 9. 29.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4명 구속

실천연대 사무실, 김승교 대표 의 사무실 및 집, 유관단체 25곳 수수색

(4) 여간 원정화 사건

가. 피의사실과 수사경과(수사기관의 수사발표에 근거함)

원정화(여, 34세)는 한 국가안전보위부 공무원, 정선무역 대표이며, 김○○(63세, 구속)은 원정화의 계부이다, 그리고 ○○(, 26세, 구속) 군대위(진)는 원정화의 인이라고 밝 다.

주요 의내용을 보면, 원정화는 한 보위부 공무원으로 포 된 후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 2001년 간 임무를 고 한 잠입, 최근까지 간 활동을 한 의이며, 김○○는 원정화의 간 활동에 편의제공, 재중 한 보위부 공무원과 수회 축한 의이다. 그리고 ○○는 원정화가 한 보위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면서도 불고지하고, 원정화에게 군안보강사로 활동 중인 탈 자 명단을 제공한 의이다.

2005. 5. ~9. 경기지방경 청과 기무사령부는 탈 여성이 대 무역을 하고 군장교들과 교제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 과 기무사가 공조하여 약 3년간 내사 진행하 다.

2008. 7. 15 경기지방경 청, 기무사령부는 원정화를 체포(7. 17. 구속)하고 수원지방검 청은 2008. 7. 17. 원정화로부터 ‘위장탈 과 사실’ 자백을 받았다.

나. 변호인의 변론

국선변호를 맡은 이상훈 공 법무관은 "피고인의 범행은 자유의사가 아닌 사회적 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절도 범행보다 은 것이라는 의문마저 든다"라면서 " 과 함께 살게 관용을 풀어 달라"라고 최후변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인터 포 에서 검색이 가능한 것들로 국가기밀이 아니다"라며

관련 자료를 탄핵 증거로 제시했다.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 기타 내용

간첩혐의로 구속된 원정화 주요 혐의는 1989.~1992. 특수부대 남파공작 훈련 도중 부상으로 감정제대(의병제대) 후 교화소 복역(백화점절도), 탈북(아연절도 적발) 등 6년간 전전, 1998. 친척의 도움으로 아연절도 사건 무마,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된 후 중국으로 파견, 1999.~2001. 연길·훈춘 등 재중 보위부에서 탈북자·남한사업가 등 100여명 납치 2001. 10. 재중 북한 보위부로부터 남한침투 지령을 받고 조선족으로 위장, 남한 남자 최○○과 결혼하는 방법으로 남한 잠입 2001. 10.~11. 양주·서울 등지 미군 기지 6곳 사진촬영 2002. 10.~2006. 12.경 총14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 재중 보위부를 방문하여 국내활동상황 보고 및 지령수령이다.

주요 지령 내용은 2003. 대북정보요원의 활동내역 파악 및 중국 유인, 남한정보기관과 연계된 남한사업가 포섭, 2004. 대북정보요원 2명(이○○, 김○○) 살해, 2005. 국정원·하나원·대성공사 위치 파악, 군장교 포섭 후 군사기밀 탐지 및 중국유인, 2006. 황장엽·김○○(부시 면담 탈북자) 위치 파악, 남한내 비전향 장기수 파악, 군안보강연, 부대위치·군장교 인적사항 파악 및 북한 찬양CD 상영, 안보강연 탈북자 등 인적사항 파악, 김○○(일본 거주 탈북자) 위치 파악 등이다.

김○○(탈북자단체 간부), 군정보요원 등을 통해 황장엽 거소 파악 시도, 하나원 동기 명단 보고,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 파악, 국가주요시설 위치파악(군부대, 국정원, 하나원, 대성공사 등) 보고,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김○○ 소령(○○사단 소속)과 교제하면서 군사기밀 탐지 시도, 대북정보요원(이○○, 김○○)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군장교 명함, 사진, 인적사항 등 파악하여 보고,

비전향 장기수 현황 및 연락처 파악 보고 등 대북정보요원(이○○, 김○○) 신상 파악·보고, 이○○ 살해 기도, 대북정보요원(김△△) 살해 지령 및 독침을 받아 예비·음모, 지령에 따라 교제하던 김○○ 소령 중국 유인 시도, 신분 노출을 우려, 조○○(중국 활동 당시 동거남) 중국 유인 시도, 2002. 10. 북한 청진에 가서 市 보위부 간부를 만나 청진 출신 탈북자를 색출해 달라는 지령을 받음.

2006. 5. 19.과 5. 21. 중국 도문을 거쳐 2차례 북한 온성 방문, 동생 만남 2006. 9.~2007. 5. 군안보강연을 50여회 실시하면서 “북핵은 자위용” 등 북한주장 동조, 북한 찬양CD 상영 등 김○○(중요정보 취득후 渡日한 탈북자)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7.~2008. 일본에 3회 출국. 일본 결혼정보업체 종매인(일본 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자)들을 통해 김○○의 위치 파악 시도, 3차 일본 방문 시에는 일본남자 3명과 선까지 봄.

2001. 9.~2006. 12. 재중 보위부로부터 수회에 걸쳐 6만불(현금 3만4천불 및 약품 등 2만6천불 상당) 공작금 수령 지난 10년간 이어진 남북화해 무드와 북한주민의 탈북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탈북자 중 간첩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있을 뿐 별다른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그 실체를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반탐, 반체제자 색출 등 업무를 주로 하는 북한 보위부의 활동영역이 탈북자 이동경로에 따라 중국·남한 등지로 확대된 사건 원정화의 남파공작 훈련 경력, 아연 5t 절도(1kg 절도시 총살)의]대 담성, 임기응변 능력, 개방적 성관념 등이 고려되어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 특수부대에서 남파공작 훈련을 받던 중 부상으로 제대, 절도 등 행위 후 보위부에 포섭,

1998.부터 중국에서 남한정보요원 등에 대한 반탐활동, 탈북자 납치 등 반체제자 색출 활동 중국에서 활동 중 남파지령을 받고 2001. 남한에 잠입, 간첩활동 전개 조선측으로 위장하여 남한남자와 결혼하는 방법으로 입국한 다음(입국직후 이혼), 탈북자라고 자수하여 합법적 활동 공간 마련 원정화는 최초 임신 7개월의 상태로 잠입하여 국내에서 출산·양육하면서 간첩활동을 하는 등 과거의 전형적인 간첩과는 그 범주를 달리함.

탈북 가장 간첩의 경우, 북한말씨를 쓰면서 남한사정에 다소 어둡더라도 의심을 받지 아니하고 간첩활동 전개 가능, 탈북자로 가장, 대북무역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북한정보에 밝은 것처럼 행동하여 군부대, 남한정보기관, 탈북자단체 등에 손쉽게 접근, 원정화는 중국을 14차례나 오고 가면서 재중 보위부 요원을 직접 만나 지령을 수령하고 활동상황을 보고,

그 외에도 휴대전화공중전화를 사용하는 등 합법공간에서 합법수단을 이용하여 활동남한침투 이후에도 3회에 걸쳐 중국을 경유, 북한을 출입하면서 지령을 받기도 함. 군 안보강연에서 북한 찬양CD를 상영하고, “북핵은 자위용” 등 북한주장을 그대로 선전함으로써 군장병의 對敵觀 무력화 시도.

원정화가 중국에서 납치·심문했다는 윤○○(북한정보 탐지 혐의 남한사업가), 99. 중국 출국 이후 실종된 점 확인(출입국조회, 가족 확인) 군장교를 포섭하여 중국으로 유인하라는 지령을 받고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김○○ 소령 중국 유인 시도중국에서 보위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100여명 납치, 복송, 군에서 안보강연을 하는 탈북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보고,

탈북자단체 간부, 정보요원을 통해 황장엽의 소재 확인 시도, 원정화는 주요지령에 대하여 실패하자 북에서 자신을 살해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거주지에 자물쇠 4개를 설치한 채 생활하면서 3년 전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옴.

군장교 인적사항 및 군부대 위치 등 파악하여 보위부에 보고(수첩에 강연 다닌 군부대 위치를 세밀하게 정리) 군장교 명함 100여장을 재중 보위부에 전달보위부에서 공작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나, 대북무역 등을 통한 외화벌이로 대북송금을 하면서 일부 자금으로 공작금 자체 조달·유선무역, 정선무역 등을 운영하면서 재중 보위부와 수역원 상당의 북한 물건 거래

2006. 2. ~ 2008. 2. 기간 동안만 3억1,400만원 상당의 거래내역 확인, 탈북자 지원금, 대북무역 횡령금 등으로 조성한 5만5천불을 동생 김○○이 북한 청진에서 운영하는 외화상점에 투자하기도 함.

2002. 3. 정착금으로 2,200만원, 2002. 3. ~ 2004. 12. 정착금으로 3개월마다 133만원(정착금 합계

3,700만원), 2002. 4. ~ 현재 매달 생계비 70만원 등 총 9,09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국가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자로 가장해 군 장교 과 축하하면서 군사기밀과 탈자 정보를 지해 에 넘긴 의(국가보안법상 간, 목적수행,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나. 사건의 진행경과

지난 8. 27. 구속 기소, 10. 1. 변론종결, 검사 5년 구형, 10. 15. 선고예정

3. 총체적 사정정국과 보수우 세력의 ‘어버 10년 되 기’, 전망

위와 같은 공안사건과 전 정권인사에 대한 비리수사, 세무조사(민주노총 법원, 금속노조 법원, 다음, KBS 외주제작사, 우리들병원, 태광실업), 언론기관과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진력과 하산인사를 통해 친민주당정권 세력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물적 토대를 물고 반이명박 세력을 제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정부 시절 약화되었던 검의 공안부와 국정원, 경찰의 대공수사기구 공안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 교, 기업을 장 함으로 국가기관과 사회전반을 재편하여 보수우의 계모니를 재구 하고 있다.

[국감] 김성희 의원 “원정화 사건은 인원 감축 결과”

[2008-10-06 16:04]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국가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 54%, 기무사 34%, 국정원 25% 가량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1998년 이후 좌파정권이 집권한 10년 동안 국가안보는 뒷전으로 밀리고 간첩 및 좌익사범 등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대공수사인력의 경우 국민의 정부 초기 3천880여명 이었으나 참여정부 말기엔 전체 인원의 54%인 2천100여명이 감소한 1천78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국정원도 10년 전에 비해 25%의 인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의 경우 10년 동안 전체 조직 정원의 19%(1천070명)가 감축됐고, 대공수사 인력은 530여명에서 350여명으로 34%(180여명)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적발된 여간첩 원정화 이전에 체포된 남파 간첩은 2006년 침투한 정경학 1명 뿐이었다.

김 의원은 “위장탈북 여간첩 사건에서 보듯이 군부대 전체가 여간첩 한명에게 농락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국민의 정부 이후 대공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10. 9.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연말까지 이른바 좌파 세력과 각종 비리 결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보수우 세력의 대표인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어버 10년’을 되기 위해 사회재편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그 강도는 불집회의 위기를 넘긴 이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시도가 성공할 것인가.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 현황

한 지 연 (민주화실천가 운동협의회)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 현황

한 지 연 (민주화실천가 운동협의회)

I.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

1. 10년간(1998-2007) 구속인원 지속적인 감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리현 >

[단위: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26
총 계	920	596	381	292	295	197	158	100	87	85	
신 수	785	506	286	247	231	165	114	64	62	64	
구 속	465	312	130	126	131	84	38	18	22	17	
구속	59.2	61.2	45.5	51	56.7	50.9	33.3	28.1	35.5	26.6	
처리계	830	501	336	228	263	153	122	75	66	75	
기 소	493	314	168	138	167	103	83	47	38	40	28
불기소	337	187	168	90	96	50	39	28	28	35	
미 제	90	95	45	64	32	44	36	25	21	10	

출처 : 대검 청¹⁾

*검 의 지표해석

1) 1997년부터 입건 및 구속 인원 지속적으로 감소

- 1997년 국가보안법 전체 입건자 수가 1,032명에서 2002년에는 295명(▼71.4%),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7년에는 64명(▼94.0%)으로 지속적인 감소

- 구속 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5년 28.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 일심회 사건 으로 구속인원 다소 증가하 으나 2007년 26.6%로 감소

1) 총계 : 구수(전년도 미제)+신수이며, 구속 및 구속 은 신수에 대한 비 임 /불기소 - 기소유예, 기소중지, 의없음, 각하 /미제 - 검 에 수된 사건 중 수사중인 사건

2) 국가보안법의 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

-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은 한총련 위상과 활동의 위 , 국가보안법의 격한 해석 및 신중한 적용 으로 입건자 및 구속자 감소 세 지속

* 2008년 1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국가보안법 적용 기소자는 28명이다.

2.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적용 처벌 비 가장 아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구속자 중 국
가보안법 7조에 의해 처벌받는 비 은 다른 조항에 비해 가장 은 수치를 지하고 있다.

연도	분류	계	조항						
			3조 반국가단체 구성	4조 목적 수행	6조 잠입 탈출	7조 찬양 고무	8조 회합 통신	9조 편의 제공	5조 자진 지원
2003	구속자	84명	2명	2명	5명	74명	1명		
	비	100%	2.4%	2.4%	6.0%	88.0%	1.2%		
2004	구속자	38명		2명		34명	2명		
	비	100%		5.3%		89.4%	5.3%		
2005	구속자	18명		1명	3명	14명			
	비	100%		5.5%	16.7%	77.8%			
2006	구속자	22명		8명	2명	11명	1명		
	비	100%		36.4%	9.1%	50.0%	4.5%		
2007.7	구속자	16명		1명	4명	10명			1명
	비	100%		6.25%	25.0%	62.5%			6.25%

* 2007년 국정감사,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에게 제출된 검 자료

3. 인 표현물에 대한 보안법 적용 확대

2007년 7월 경 은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 에 게시하 다는 이유로 20
여개의 민간단체의 이지 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하여 제 명령을 하 고 2008년 2월 14
일 이에 하지 않은 전국 민회를 비 한 7개 민간단체에 대해 경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서를 발부하 다. 일부 단체들은 경 의 소환에 불 하고 있지만 한총련의 경우 정보통신망
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보통신부의 게시물 제명령서에 따르면 “해당 불법
한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로 의결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 법 >제44조의7 제3항에 의

하여 제를 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민간심의기구인데 인터넷 게시물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상 7조 위반인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이 정보통신부에 질의한 결과 윤리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에 대하여 국정원, 경찰 관계중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게시물에 대해서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게시물에 중 국가보안법 7조 위반 게시물을 경이 지속적으로 검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 민간심의기구가 게시물 제정요구를 하거나 정보통신부 장관이 민간기구의 심의결과만을 가지고 게시물의 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살 본 바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하는 표현물의 감시는 그 대상이 인터넷 상의 표현물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적인 적용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이용한 간적인 제약으로 교하게 방법이 바뀌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법적인 단 없이 민간심의기구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라고 경이 정하는 표현물을 정보통신부 명령에 의해 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되살아온 막걸리 보안법

-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 적용 확대 -

2007년 인터넷 서점 <미르> 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이 언론을 통해 다. 그러나 인터넷 서점의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은 <미르> 이외에도 여러 건이다. 수원의 <문서점>, 중국동의 <가자 헌책방> 온라인 헌책방들 몇 곳이 구속은 불구속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를 받았고 서점당 500여권의 중고서적을 수당했다. 중고 서점 주인들은 올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중고 서점 주인은 대부분 영세상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의로 구속된다 하더라도 공개적인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수사와 재 을 받고 있어 피해 현 이 정확히 과 되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버민 방위사령부>의 운영자와 회원, 세 사람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모두 30-40십대 직장인으로 온라인 를 통해서 만나 에서 활동 하 다. 활동내용은 주로 한의 조선중 통신, 노동신문, 구국전선, 제일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한호석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통일학연구소의 인터넷 사이 에 게재된 을 재인용 하는 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중 통신, 조선신보 의 을 재인용 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하여 2008월 8월 기소되었다.

5. 공개 활동하는 운동단체에 적용

공개 활동을 하는 운동단체에 대해 이적단체를 의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은 2002년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범청학년 후원회, 2003년 진보의련(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를 마지막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없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발생하고 있다.

서울 경 청 인동 대공분실은 8월 26일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7명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의로 연행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 으나 8월 28일 연행자 전원 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 되었다.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거나,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 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 하다”는 것이 재부의 기각 사유 다. 이어 9월 27일 국정원은 공동선언실천연대 전현직 간부 7명을 연행하 고 그 중 5명이 구속되었다.

II. MB정부 출범이후 공안기구 확장 노력

1. 국정원 (국정원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1) 국정원법

정권 초기부터 준비, 지난 3월 김성호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법제실에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국정원 직무범위의 실제 제한을 없 는 것이 핵심으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 ·방 ·대 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정된 죄에 대한 수사 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 ’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2) 러방지법

국정원 주도의 대 러 터를 만드는 것(대 러 터장을 국정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대 러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국정원이 가지게 된다.

참여정부 당시 수사권 지, 국내정보 수집 권한 지하고 경 로 이양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도의 정보기과 신설 필요, 보안업무 기 조정권한 지, 예산 의회통제 가능 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 개 을 요구했으나 개 은 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 히려 ‘ 러’를 미로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3) 통신비밀보호법

이동통신회사들이 대전화 감청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시 협조하는 것으로 17대국회에서 무산되었으나 개정이 다시 시도 되고 있다. 국제전화는 현재 핵, 김정일 의 단어를 사용할 시 자동 음이 되는데 같은 형식의 음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상비용은 250억 이상. 국정원은 2005년 불법 감청 이후 장비 자신 기하 지만 통신업체에서 장비를 보유하게 하여 권한 용 소지를 없 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2. 검

1) 공안3과 부활

9월 18일 대검이 공안3과 신설 검토 진중임이 보도 되었다. 부장검사 과장과 연구관 검사 1~2명을 포함한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불집회 불법 집단행동 사범, 최근의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과 같은 신뢰저해 사범, 대 러를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 를 위협하는 신뢰저해 사범을 업무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 다.

대검 공안부는 공안 1·2·3·4과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1994년 공안4과가 없어졌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말 ‘검 개 ’을 걸고 노동과 집단행동을 전담하던 공안3과를 지하 다. 공안3과의 불활은 불집회로 인한 일시적인 업무증가를 미로 공안기구를 확대하려는 의도 이다. 또 과거사 청산에 미온적이던 검 이 ‘개 ’, ‘과거사청산’, ‘반성’없이 오히려 ‘공안검 ’이 득세하던 시절로의 후 를 의미한다.

3. 경

1) 체포전담반 신설

지난 3월 15일 서울경 청에서 열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참가자를 체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체포 전담반'을 신설·운용 하겠다"고 밝히 고 7월 집회 현장에 체포전담반을 투입했다. 경 청은 오는 2013년 완전 지되는 전·의경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 초 선발한 인력 900명 가운데 일부를 7월부터 운용할 계 이라 고 밝 었다. 8개 기동대로 구성 되었으며 성매매 단속 부대인 스텔스 (Stealth) 2개 기동대 240명과 여경 33명으로 구성되고 불심검문 방법 활동 전담부대인 ‘그 포스’(Green Force)는 3개 중대로 360명으로 구성되었다. 7월 30일 설한 체포전담반을 9월 들어 성매

매 단속과 불심검문 에 전용하고 있다.

2) 불관용 원칙 적용 선언

어청수 경 청장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불법 처리하겠다"라며 "불법 시위에 대한 민사상 해배상 청구와 결심 회부,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방침도 진 중"이라고 밝 다.

3) 전의경제 지 백지화

9월 17일 병무청장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의경제 지방 침을 무시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전·의경을 매년 1만2천명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으며 그 이후 존속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 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http://www.delsa.or.kr>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9 세정빌라 1-101

전화 02)326-1989 팩스 02)326-1989